

제356회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2월6일(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계속)
3. 화학제품관리법안(계속)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5.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2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4.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5.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6.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4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8.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4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5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6.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7.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5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5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
6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3.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상정된 안건

-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
-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
- 3. 화학제품관리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金成泰·문진국·홍문중·박덕흠·원유철·이명수·신보라·성일중·함진규 의원 발의)(계속) 10
-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10
- 5.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 · 김종대 · 김현권 · 노회찬 · 민홍철 · 송옥주 · 심상정 · 우원식 · 윤소하 · 추혜선 의원 발의) 12
7.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 · 이원욱 · 박재호 · 한정애 · 윤종오 · 김해영 · 홍영표 · 서형수 · 송옥주 · 이용득 · 이학영 · 최인호 · 박홍근 · 박광온 · 이정미 · 홍익표 · 김현권 · 기동민 · 정춘숙 · 진선미 · 강병원 · 신창현 의원 발의) 12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찬열 · 오세정 · 김철민 · 송기석 · 김관영 · 김경진 · 윤영일 · 김종희 · 유성엽 의원 발의) 12
9.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영진 · 강병원 · 신창현 · 송옥주 · 이학영 · 윤관석 · 민홍철 · 이찬열 · 윤호중 의원 발의) 12
10.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1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 · 송옥주 · 김영호 · 윤관석 · 추미애 · 정성호 · 정춘숙 · 김정우 · 문진국 · 박재호 의원 발의) 12
1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 · 박찬대 · 이찬열 · 전재수 · 변재일 · 박용진 · 안규백 · 신경민 · 최인호 · 양승조 · 김민기 의원 발의) 12
1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 · 함진규 · 박덕흠 · 김도읍 · 이장우 · 김성원 · 유기준 · 이양수 · 유재중 · 윤상현 · 김세연 · 이진복 의원 발의) 12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 · 박준영 · 서형수 · 송옥주 · 위성곤 · 이연주 · 이용득 · 이원욱 · 이정미 · 최도자 · 최인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30) 12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 · 김삼화 · 박준영 · 서형수 · 송옥주 · 위성곤 · 이연주 · 이용득 · 이원욱 · 이정미 · 최도자 · 최인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42) 13
1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 · 김삼화 · 박병석 · 박준영 · 서형수 · 송옥주 · 위성곤 · 유성엽 · 이연주 · 이용득 · 이원욱 · 이정미 · 최도자 · 최인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0319) 13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 · 김종로 · 김관영 · 이찬열 · 박주선 · 이용주 · 김삼화 · 주승용 · 조배숙 · 이동섭 의원 발의) 13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노웅래 · 강창일 · 장정숙 · 황주홍 · 박주선 · 최도자 · 이용주 · 손금주 · 박선숙 · 윤영일 의원 발의) 13
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 · 박재호 · 박정 · 박찬대 · 민홍철 · 정성호 · 추미애 · 신창현 · 송옥주 · 최인호 · 김민기 · 윤종오 · 홍영표 의원 발의) 13
20.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강병원 · 서형수 · 신창현 · 이용득 · 한정애 · 홍영표 · 권미혁 · 김정우 · 김한정 · 문희상 · 민병두 · 박정 · 서영교 · 소병훈 · 송기현 · 어기구 · 원혜영 · 유승희 · 윤관석 · 이수혁 · 이원욱 · 이훈 · 임종성 · 정성호 · 최운열 · 표창원 · 황주홍 · 노웅래 의원 발의) 13
2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2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김종훈 · 서형수 · 윤관석 · 이정미 · 박홍근 · 손혜원 · 신창현 · 소병훈 · 홍의락 · 심기준 · 박광온 · 강훈식 · 김한정 · 김병기 · 유동수 · 김철민 · 권미혁 · 송옥주 · 문희상 · 표창원 · 김상희 · 노웅래 · 이수혁 · 한정애 · 박주민 의원 발의) 13
23.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정동영 · 이개호 · 박주현 · 최도자 · 강창일 · 김경진 · 윤영일 · 이용주 · 손금주 의원 발의) 13
24.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찬열 · 오세정 · 김철민 · 송기석 · 김관영 · 김경진 · 윤영일 · 김종희 · 유성엽 의원 발의) 13
25.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 · 송옥주 · 신창현 · 김영호 · 윤관석

- 추미애 · 정성호 · 이용득 · 정춘숙 · 김정우 · 문진국 · 박재호 의원 발의) 13
26.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2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상돈 · 이정미 · 신창현 · 김관영 · 황주홍 · 홍영표 · 이종구 · 조배숙 · 김동철 · 심상정 의원 발의) 13
2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정동영 · 이개호 · 박주현 · 최도자 · 강창일 · 김경진 · 윤영일 · 이용주 · 손금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9925) 13
2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노웅래 · 강창일 · 장정숙 · 황주홍 · 박주선 · 최도자 · 이용주 · 손금주 · 박선숙 · 윤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10608) 13
3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찬열 · 오세정 · 김철민 · 송기석 · 김관영 · 김경진 · 윤영일 · 김중회 · 유성엽 의원 발의) 13
31. 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김현권 · 정성호 · 신창현 · 김삼화 · 홍의락 · 서형수 · 남인순 · 강병원 · 한정애 · 송옥주 · 김종대 · 김정우 · 유동수 의원 발의) 13
32. 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3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김기선 · 이현승 · 김종석 · 김성원 · 엄용수 · 곽대훈 · 백승주 · 경대수 · 정갑윤 · 이은재 · 김한표 의원 발의) 13
34.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찬열 · 오세정 · 김철민 · 송기석 · 김관영 · 김경진 · 윤영일 · 김중회 · 유성엽 의원 발의) 13
35.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최도자 · 곽대훈 · 이개호 · 박주현 · 박주선 · 강창일 · 이용주 · 윤영일 · 정동영 의원 발의) 13
3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정동영 · 이개호 · 박주현 · 최도자 · 강창일 · 김경진 · 윤영일 · 이용주 · 손금주 의원 발의) 14
3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3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신경민 · 소병훈 · 김철민 · 김영호 · 정동영 · 김중로 · 김정우 · 유동수 · 신창현 · 박정 · 박경미 · 전해철 · 윤관석 · 추미애 의원 발의) 14
3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 · 김승희 · 나경원 · 황주홍 · 박완수 · 송석준 · 이종명 · 황영철 · 이현재 · 김성찬 · 송희경 · 이원욱 의원 발의) 14
4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 · 이종배 · 염동열 · 조훈현 · 김한표 · 이철규 · 김종석 · 김성원 · 김석기 · 이은재 · 문진국 · 유동수 · 정성호 · 박완수 의원 발의) 14
4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 · 정춘숙 · 김정우 · 신창현 · 인재근 · 안호영 · 전해숙 · 이용주 · 김해영 · 이학영 의원 발의) 14
4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이용득 · 문희상 · 송옥주 · 서형수 · 김영호 · 김한정 · 이원욱 · 한정애 · 강병원 · 홍영표 의원 발의) 14
43.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 · 박재호 · 신창현 · 강병원 · 한정애 · 김해영 · 이정미 · 이용득 · 신용현 · 전재수 · 박홍근 · 최인호 · 송옥주 · 박정 · 민홍철 · 권미혁 의원 발의) 14
44. 지진 · 지진해일 ·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 · 오세정 · 최명길 · 변재일 · 김경진 · 고용진 · 추혜선 · 김성수 · 강효상 · 신상진 · 김관영 의원 발의) 14
4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이상돈 · 이석현 · 문진국 · 장석춘 · 신동근 · 신창현 · 강병원 · 이용득 · 송옥주 · 김삼화 · 서형수 · 한정애 · 박남춘 · 유동수 · 박

찬대·홍일표·안상수·송영길·윤관석·정유섭·임이자 의원 발의) 14

46.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종회·김철민·송기석·오세정·이찬열·김관영·김경진·윤영일·박준영 의원 발의) 14

4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오세정·김철민·송기석·김관영·김경진·윤영일·김종회·유성엽 의원 발의) 14

48.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김해영·박재호·서형수·안규백·안호영·이학영·임종성·전재수·정성호 의원 발의) 14

4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오세정·김철민·송기석·김관영·김경진·윤영일·김종회·유성엽 의원 발의) 14

5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성수·김영진·김종민·박재호·박홍근·서형수·신창현·윤관석·윤호중·이용득·제윤경·홍의락 의원 발의) 14

5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송옥주·신창현·하태경·김영호·윤관석·추미애·박찬대·이용득·정춘숙·김병욱·김정우·박정·박재호 의원 발의) ... 14

5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이개호·이용득·위성곤·김병관·한정애·문희상·유승희·송옥주·김철민·서형수·김영호·강병원·홍영표 의원 발의) 14

5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송옥주·신창현·하태경·김영호·윤관석·추미애·박찬대·이용득·정춘숙·김병욱·김정우·박정·박재호 의원 발의) 14

5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이용득·한정애·송옥주·강병원·서형수·강훈식·위성곤·김철민·심재권 의원 발의) 15

5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하태경·박주민·서형수·이용득·권칠승·이훈·김철민·이정미·임종성·강병원 의원 발의) 15

56.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안규백·김경수·최인호·오영훈·주승용·이찬열·이원욱·윤영일·조정식 의원 발의) 15

57.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5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박재호·신창현·강병원·한정애·김해영·이정미·이용득·신용현·전재수·박홍근·최인호·송옥주·박정·민홍철·권미혁 의원 발의) 15

5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박재호·신창현·강병원·한정애·김해영·이정미·이용득·신용현·전재수·박홍근·최인호·송옥주·민홍철·권미혁 의원 발의) 15

6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박재호·신창현·강병원·한정애·김해영·이정미·이용득·신용현·전재수·박홍근·최인호·송옥주·박정·민홍철·권미혁 의원 발의) 15

6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

6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6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임이자·홍문표·문진국·이종명·강석진·김승희·신보라·백승주·하태경 의원 발의) 15

6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김영호·추미애·김정우·박찬대·정성호·소병훈·정동영·민홍철·강창일·김종회 의원 발의) 15

- 6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윤영일 · 이언주 · 김종희 · 박선숙 · 김경진 · 송기석 · 장정숙 · 손금주 · 최도자 의원 발의) 15
- 6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 · 윤영일 · 김종로 · 김관영 · 신용현 · 장정숙 · 채이배 · 박준영 · 김경진 · 오세정 · 정운천 의원 발의) 15
- 6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김영호 · 추미애 · 김정우 · 박찬대 · 정성호 · 소병훈 · 정동영 · 민홍철 · 강창일 · 김종희 의원 발의) 15
- 6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서형수 · 송옥주 · 정재호 · 백재현 · 진선미 · 윤관석 · 손혜원 · 김상희 · 장정숙 의원 발의) 15
- 6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 · 금태섭 · 권미혁 · 문진국 · 김경협 · 이용득 · 최인호 · 박정 · 송옥주 · 노회찬 · 신창현 · 박찬대 · 홍영표 의원 발의) 15
- 7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위성곤 · 신창현 · 강병원 · 소병훈 · 유동수 · 유승희 · 김현권 · 정재호 · 권미혁 · 어기구 · 조승래 · 민병두 의원 발의) 15
- 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위성곤 · 신창현 · 강병원 · 소병훈 · 유동수 · 유승희 · 김현권 · 정재호 · 권미혁 · 어기구 · 조승래 · 민병두 의원 발의) 15
- 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조승래 · 윤관석 · 김종민 · 최운열 · 문희상 · 유승희 · 원혜영 · 최인호 · 김경수 의원 발의) 15
-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 · 김종대 · 노회찬 · 추혜선 · 심상정 · 윤소하 · 박경미 · 박용진 · 김경협 · 김종훈 의원 발의) 15
- 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강훈식 · 김상희 · 김영진 · 김종민 · 박경미 · 서형수 · 송옥주 · 신창현 · 이수혁 · 이용득 · 진선미 · 홍의락 의원 발의) 15
- 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권칠승 · 안규백 · 정춘숙 · 김철민 · 전해철 · 박찬대 · 강훈식 · 제윤경 · 문진국 · 유은혜 · 김병욱 · 윤관석 · 노웅래 · 추미애 · 서형수 · 표창원 · 권미혁 · 인재근 · 소병훈 · 이원욱 · 김종민 · 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0409) 16
- 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 · 김정우 · 박정 · 강훈식 · 소병훈 · 박찬대 · 김철민 · 전해철 · 박남춘 · 신창현 · 김경진 · 채이배 의원 발의) 16
- 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강병원 · 김병욱 · 남인순 · 박정 · 신창현 · 윤관석 · 윤종오 · 이용득 · 이원욱 · 추미애 · 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63) 16
- 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 · 주승용 · 김종로 · 김종희 · 김삼화 · 손금주 · 김광수 · 최경환(국) · 김경진 · 이동섭 의원 발의) 16
- 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 · 김수민 · 박준영 · 신용현 · 유성엽 · 장정숙 · 정동영 · 천정배 · 최도자 · 황주홍 의원 발의) 16
- 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장정숙 · 송기석 · 박준영 · 주승용 · 박지원 · 김동철 · 김관영 · 신용현 · 김경진 의원 발의) 16
- 8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김영진 · 이찬열 · 김정우 · 김경협 · 소병훈 · 유은혜 · 김상희 · 박정 · 박남춘 · 신창현 의원 발의) 16
- 8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김순례 · 문진국 · 장석춘 · 홍문중 · 광상도 · 윤종필 · 송희경 · 함진규 · 윤영일 의원 발의) 16
- 8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김영진 · 이찬열 · 김경협 · 소병훈 · 유은혜 · 박정 · 박남춘 · 신창현 · 조경태 의원 발의) 16
- 8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윤영일 · 김광수 · 이찬열 · 천정배 · 김동철 · 주승용 · 손금주 · 정인화 · 신용현 · 채이배 · 오세정 의원 발의) 16
- 8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 · 김민기 · 김영호 · 안규백 · 송옥주 · 신창현 · 유동수 · 문진국 · 원혜영 · 박정 · 오영훈 · 정동

영 · 김철민 · 김정우 · 김종희 · 전해철 의원 발의) 16

8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 · 주승용 · 김중로 · 김종희 · 김삼화 · 손금주 · 김광수 · 최경환(국) · 김경진 · 이동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47) 16

8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 · 김수민 · 박준영 · 신용현 · 유성엽 · 장정숙 · 정동영 · 천정배 · 최도자 · 황주홍 의원 발의) 16

8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 · 윤종필 · 조훈현 · 권석창 · 윤영석 · 임이자 · 정병국 · 서청원 · 김순례 · 박맹우 의원 발의) 16

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김민기 · 문희상 · 이개호 · 이해찬 · 강창일 · 김영호 · 이용득 · 원혜영 · 김철민 · 홍영표 의원 발의) 16

9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 · 조배숙 · 이동섭 · 황주홍 · 오세정 · 이연주 · 박준영 · 김경진 · 김광수 · 김삼화 · 김중로 · 하태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9747) 16

9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 · 정춘숙 · 김상희 · 소병훈 · 신창현 · 윤관석 · 채이배 · 서형수 · 김종희 · 오제세 · 남인순 의원 발의) 16

9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민기 · 김정우 · 김철민 · 박남춘 · 박재호 · 박정 · 서영교 · 송옥주 · 신창현 · 위성곤 · 이용득 의원 발의) 16

9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윤소하 · 심상정 · 추혜선 · 김종훈 · 윤종오 · 이용득 · 서형수 의원 발의) 17

9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 · 금태섭 · 윤관석 · 김철민 · 박남춘 · 권미혁 · 남인순 · 박찬대 · 김정우 · 김병욱 · 노웅래 · 천정배 · 박정 · 민홍철 · 유동수 의원 발의) 17

9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 · 강석진 · 이완영 · 곽대훈 · 김명연 · 김광립 · 김석기 · 곽상도 · 김승희 · 성일중 의원 발의) 17

9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성수 · 김영진 · 김종민 · 박재호 · 박홍근 · 서형수 · 신창현 · 윤관석 · 윤호중 · 이용득 · 제윤경 · 홍의락 의원 발의) 17

9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민병두 · 유승희 · 유동수 · 박찬대 · 김경수 · 서영교 · 문희상 · 백재현 · 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9870) 17

9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인재근 · 소병훈 · 남인순 · 신경민 · 진선미 · 이용득 · 문희상 · 원혜영 · 안호영 · 김민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9970) 17

9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 · 심상정 · 노회찬 · 추혜선 · 윤소하 · 김종대 · 정성호 · 박주민 · 이용주 · 김현아 의원 발의) 17

10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찬열 · 오세정 · 김철민 · 송기석 · 김관영 · 김경진 · 윤영일 · 김종희 · 유성엽 의원 발의) 17

1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박광운 · 김두관 · 김종민 · 김해영 · 김관영 · 권철승 · 신경민 · 최인호 · 윤호중 · 윤관석 · 이찬열 · 박영선 · 김정우 · 박홍근 · 백혜련 · 심기준 의원 발의) 17

1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권미혁 · 이용득 · 심기준 · 문희상 · 이수혁 · 이개호 · 강병원 · 한정애 · 서영교 의원 발의) 17

1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서형수 · 송옥주 · 정재호 · 백재현 · 진선미 · 윤관석 · 손혜원 · 김상희 · 장정숙 · 이용득 · 신창현 의원 발의) 17

1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강병원 · 김병욱 · 남인순 ·

박정 · 신창현 · 윤관석 · 윤종오 · 이용득 · 이원욱 · 원혜영 · 추미애 · 한정애 의원 발의) 17

10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金成泰 · 천정배 · 홍문중 · 문진국 ·
곽상도 · 함진규 · 장석춘 · 하태경 · 한정애 의원 발의) 17

10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 · 김병관 · 박찬
대 · 이찬열 · 전재수 · 윤호중 · 박광온 · 최인호 · 권칠승 · 양승조 의원 발의) 17

10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 · 여상규 · 정갑윤 · 황영철
· 박명재 · 이현재 · 권성동 · 이양수 · 이종명 · 오신환 의원 발의) 17

10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 · 문진국 · 윤영석 · 조경태 · 강석진 ·
정유섭 · 이은권 · 이종명 · 나경원 · 박덕흠 의원 발의) 17

10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 · 정병국 · 오신환 · 유승민 · 박인숙 ·
정운천 · 김관영 · 유의동 · 김삼화 · 이언주 의원 발의) 17

11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 · 문진국 · 김승희 · 김정훈 · 이명수 ·
곽대훈 · 김수민 · 윤영일 · 김성찬 · 정유섭 · 김종석 의원 발의) 17

11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민기 · 김정
우 · 김철민 · 박남춘 · 박재호 · 박정 · 서영교 · 송옥주 · 신창현 · 위성곤 · 이용득 의원 발의) ... 17

1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김순례 · 문진
국 · 장석춘 · 홍문중 · 곽상도 · 윤종필 · 송희경 · 함진규 · 윤영일 의원 발의) 17

113. 파독 광부 · 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 · 박맹우
· 함진규 · 김태흠 · 홍문표 · 이현재 · 박찬우 · 성일종 · 김현아 · 주호영 · 곽대훈 · 이양수 · 정진
석 · 문진국 · 강석진 · 노웅래 · 신상진 의원 발의) 17

(10시34분 개의)

○위원장 **홍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올해 첫 번째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늦었지만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 해 소망하는 모든 일이 다 이뤄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환경소위에서 심의를 마친 법안의 의결과 작년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 및 신규 법안 상정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개의되었습니다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 등 나머지 의사일정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될 법안까지 포함하면 712건의 법률안이 소위원회에 계류하게 됩니다. 이 중에 쟁점 법안도 일부 있지만 쉽게 처리될 수 있는 법안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와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는 것은 위원님 모두

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고 해결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만 자칫 쟁점에만 매달리다가 다른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관련한 법안들도 저희가 2월 중에는 꼭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간사님들 중심으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쟁점 법안들도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의해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온 위원회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연 입법조사관입니다.

이세진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번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법률안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 화학제품관리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임이자·金成泰·문진국·홍문중·박덕흠·원유철·이명수·신보라·성일중·함진규 의원 발의)(계속)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10시36분)

○위원장 **홍영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한정에 환경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한정애** 환경소위원장 한정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월 18일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 3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제품관리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실태 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통해 위해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여 제품의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둘째,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과 같이 유해생물의 제거 기능이 있는 살생물물질과 해당 물질을 사용한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셋째, 승인을 받지 않은 살생물제품을 판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제품의 판매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화학물질의 등록체계를 개편하여 기존화학물질은 연간 1t 이

상, 신규화학물질은 연간 0.1t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제조량, 수입량, 고독성물질 여부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등록유예기간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고 개별 사업자의 취급량이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국내 총 유통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화학물질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등록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회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위 활동을 해 주신 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김삼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삼화 위원 제가 환경법안소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의문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한테 질의할게요.

화평법 10조를 보면, 10조가 아마 연간 0.1t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등록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것 같은데 아마 이정미 위원님도 서면으로 우려했던 것처럼 연간 유통량이 0.1t 미만인 화학물질이 약 78%에 이르고 등록 회피로 인한 각종 부작용도 예상되고 그래서 아마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안도 나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10조 5항을 보면 아까 한정애 소위원장님도 언급이 있었는데 ‘국내 총 유통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 총 유통량의 기준을 뭘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예컨대 0.1t 정도로 해서 10개 하면 1t에 해당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분산돼서 수입·제조되는 경우를 고려해서 유통량을 넣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유통량으로 해 놓으면 그것이 연간 유통량인지 누적 유통량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

왜 여쭙보느냐 하면 2016년 한 해 동안에 나눠 가지고 기업이 10개 이상 해서 유통량이 1t 이상 되는 화학물질이 얼마나 되나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2016년에 29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런데 화평법이 도입된 이후에—2015년 1월이잖아요—누적 유통량이 1t 이상 되는 것은 얼마나 돼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49종 정도 됩니다.

○**김삼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언제로 할 것이냐, 누적 유통량을 연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된 것을 다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 정확하지가 않아서 기준을 뭘로 잡느냐? 물론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될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총 유통량의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환경부가 이것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위원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꼼꼼하게 지적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일단 누적으로 하는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 양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요. 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경우에도 연간 유통량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들 때 거기에다가 자세하게 넣도록 하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정리하고 의견을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러면 환경부는 국내 총 유통량은 연간 유통량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생각을 갖고 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연간 유통량.

○**김삼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서형수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서형수 위원** 제가 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했기 때문에 방금 장관님 답변하셨듯이 기왕에 지

금 현재 모든 기준이 연간 유통량 0.1t, 1t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총 유통량도 연간 단위로 한다면, 논의가 됐다는 것을 확인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동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기에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41조부터 48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49조부터 제55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5분)

○위원장 **홍영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국정감사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국정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개별 위원님들의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수정·보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감사 실시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감사 대상 기관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소관 부처별 건수는 환경부 262건, 고용노동부 220건, 기상청 48건 등 총 530건이며 이러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보고서(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 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서(안)에 특별히 수정하여야 할 의견이 없으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

정미·김종대·김현권·노회찬·민홍철·송옥주·심상정·우원식·윤소하·추혜선 의원 발의)

7.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

원식·이원욱·박재호·한정애·윤종오·김해영·홍영표·서형수·송옥주·이용득·이학영·최인호·박홍근·박광은·이정미·홍익표·김현권·기동민·정춘숙·진선미·강병원·신창현 의원 발의)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

주홍·이찬열·오세정·김철민·송기석·김관영·김경진·윤영일·김종희·유성엽 의원 발의)

9.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

정애·김영진·강병원·신창현·송옥주·이학영·윤관석·민홍철·이찬열·윤호중 의원 발의)

10.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송옥주·김영호·윤관석·추미애·정성호·정춘숙·김정우·문진국·박재호 의원 발의)

1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

의)(김해영·박찬대·이찬열·전재수·변재일·박용진·안규백·신경민·최인호·양승조·김민기 의원 발의)

1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

의)(이헌승·함진규·박덕흠·김도읍·이장우·김성원·유기준·이양수·유재중·윤상현·김세연·이진복 의원 발의)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박준영·서형수·송옥주·위성곤·이언주·이용득·이원욱·이정미·최도자·최인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30)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김삼화·박준영·서형수·송옥주·위성곤·이언주·이용득·이원욱·이정미·최도자·최인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42)
1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김삼화·박병석·박준영·서형수·송옥주·위성곤·유성엽·이언주·이용득·이원욱·이정미·최도자·최인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0319)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김중로·김관영·이찬열·박주선·이용주·김삼화·주승용·조배숙·이동섭 의원 발의)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노응래·강창일·장정숙·황주홍·박주선·최도자·이용주·손금주·박선숙·윤영일 의원 발의)
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박재호·박정·박찬대·민홍철·정성호·추미애·신창현·송옥주·최인호·김민기·윤종오·홍영표 의원 발의)
20.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병원·서형수·신창현·이용득·한정애·홍영표·권미혁·김정우·김한정·문희상·민병두·박정·서영교·소병훈·송기현·어기구·원혜영·유승희·윤관석·이수혁·이원욱·이훈·임종성·정성호·최운열·표창원·황주홍·노응래 의원 발의)
2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김종훈·서형수·윤관석·이정미·박홍근·손혜원·신창현·소병훈·홍의락·심기준·박광온·강훈식·김한정·김병기·유동수·김철민·권미혁·송옥주·문희상·표창원·김상희·노응래·이수혁·한정애·박주민 의원 발의)
23.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정동영·이개호·박주현·최도자·강창일·김경진·윤영일·이용주·손금주 의원 발의)
24.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오세정·김철민·송기석·김관영·김경진·윤영일·김종희·유성엽 의원 발의)
25.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송옥주·신창현·김영호·윤관석·추미애·정성호·이용득·정춘숙·김정우·문진국·박재호 의원 발의)
26.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상돈·이정미·신창현·김관영·황주홍·홍영표·이종구·조배숙·김동철·심상정 의원 발의)
2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정동영·이개호·박주현·최도자·강창일·김경진·윤영일·이용주·손금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9925)
2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노응래·강창일·장정숙·황주홍·박주선·최도자·이용주·손금주·박선숙·윤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10608)
3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오세정·김철민·송기석·김관영·김경진·윤영일·김종희·유성엽 의원 발의)
3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김현권·정성호·신창현·김삼화·홍의락·서형수·남인순·강병원·한정애·송옥주·김종대·김정우·유동수 의원 발의)
3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기선·이현승·김종석·김성원·엄용수·곽대훈·백승주·경대수·정갑윤·이은재·김한표 의원 발의)
3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오세정·김철민·송기석·김관영·김경진·윤영일·김종희·유성엽 의원 발의)
3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

- 표발의)(주승용 · 최도자 · 곽대훈 · 이개호 · 박주현 · 박주선 · 강창일 · 이용주 · 윤영일 · 정동영 의원 발의)
- 3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정동영 · 이개호 · 박주현 · 최도자 · 강창일 · 김경진 · 윤영일 · 이용주 · 손금주 의원 발의)
- 3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신경민 · 소병훈 · 김철민 · 김영호 · 정동영 · 김중로 · 김정우 · 유동수 · 신창현 · 박정 · 박경미 · 전해철 · 윤관석 · 추미애 의원 발의)
- 3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 · 김승희 · 나경원 · 황주홍 · 박완수 · 송석준 · 이종명 · 황영철 · 이현재 · 김성찬 · 송희경 · 이원욱 의원 발의)
- 4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 · 이종배 · 염동열 · 조훈현 · 김한표 · 이철규 · 김종석 · 김성원 · 김석기 · 이은재 · 문진국 · 유동수 · 정성호 · 박완수 의원 발의)
- 4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 · 정춘숙 · 김정우 · 신창현 · 인재근 · 안호영 · 전해숙 · 이용주 · 김해영 · 이학영 의원 발의)
- 4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이용득 · 문희상 · 송옥주 · 서형수 · 김영호 · 김한정 · 이원욱 · 한정애 · 강병원 · 홍영표 의원 발의)
- 43.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 · 박재호 · 신창현 · 강병원 · 한정애 · 김해영 · 이정미 · 이용득 · 신용현 · 전재수 · 박홍근 · 최인호 · 송옥주 · 박정 · 민홍철 · 권미혁 의원 발의)
- 4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 · 오세정 · 최명길 · 변재일 · 김경진 · 고용진 · 추혜선 · 김성수 · 강효상 · 신상진 · 김관영 의원 발의)
- 4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이상돈 · 이석현 · 문진국 · 장석춘 · 신동근 · 신창현 · 강병원 · 이용득 · 송옥주 · 김삼화 · 서형수 · 한정애 · 박남춘 · 유동수 · 박찬대 · 홍일표 · 안상수 · 송영길 · 윤관석 · 정유섭 · 임이자 의원 발의)
- 46.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김종희 · 김철민 · 송기석 · 오세정 · 이찬열 · 김관영 · 김경진 · 윤영일 · 박준영 의원 발의)
- 4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찬열 · 오세정 · 김철민 · 송기석 · 김관영 · 김경진 · 윤영일 · 김종희 · 유성엽 의원 발의)
- 48.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김해영 · 박재호 · 서형수 · 안규백 · 안호영 · 이학영 · 임종성 · 전재수 · 정성호 의원 발의)
- 4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찬열 · 오세정 · 김철민 · 송기석 · 김관영 · 김경진 · 윤영일 · 김종희 · 유성엽 의원 발의)
- 5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성수 · 김영진 · 김종민 · 박재호 · 박홍근 · 서형수 · 신창현 · 윤관석 · 윤호중 · 이용득 · 제윤경 · 홍의락 의원 발의)
- 5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 · 송옥주 · 신창현 · 하태경 · 김영호 · 윤관석 · 추미애 · 박찬대 · 이용득 · 정춘숙 · 김병욱 · 김정우 · 박정 · 박재호 의원 발의)
- 5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이개호 · 이용득 · 위성곤 · 김병관 · 한정애 · 문희상 · 유승희 · 송옥주 · 김철민 · 서형수 · 김영호 · 강병원 · 홍영표 의원 발의)
- 5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 · 송옥주 · 신창현 · 하태경 · 김영호 · 윤관석 · 추미애 · 박찬대 · 이용득 · 정춘숙 · 김병욱 · 김정우 · 박정 · 박재호 의원 발의)

5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이용득·한정애·송옥주·강병원·서형수·강훈식·위성곤·김철민·심재권 의원 발의)
5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하태경·박주민·서형수·이용득·권철승·이훈·김철민·이정미·임종성·강병원 의원 발의)
56.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안규백·김경수·최인호·오영훈·주승용·이찬열·이원욱·윤영일·조정식 의원 발의)
57.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박재호·신창현·강병원·한정애·김해영·이정미·이용득·신용현·전재수·박홍근·최인호·송옥주·박정·민홍철·권미혁 의원 발의)
5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박재호·신창현·강병원·한정애·김해영·이정미·이용득·신용현·전재수·박홍근·최인호·송옥주·민홍철·권미혁 의원 발의)
6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박재호·신창현·강병원·한정애·김해영·이정미·이용득·신용현·전재수·박홍근·최인호·송옥주·박정·민홍철·권미혁 의원 발의)
6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
6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임이자·홍문표·문진국·이종명·강석진·김승희·신보라·백승주·하태경 의원 발의)
6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김영호·추미애·김정우·박찬대·정성호·소병훈·정동영·민홍철·강창일·김종희 의원 발의)
6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윤영일·이언주·김종희·박선숙·김경진·송기석·장정숙·손금주·최도자 의원 발의)
6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윤영일·김중로·김관영·신용현·장정숙·채이배·박준영·김경진·오세정·정운천 의원 발의)
6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김영호·추미애·김정우·박찬대·정성호·소병훈·정동영·민홍철·강창일·김종희 의원 발의)
6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서형수·송옥주·정재호·백재현·진선미·윤관석·손혜원·김상희·장정숙 의원 발의)
6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금태섭·권미혁·문진국·김경협·이용득·최인호·박정·송옥주·노회찬·신창현·박찬대·홍영표 의원 발의)
7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위성곤·신창현·강병원·소병훈·유동수·유승희·김현권·정재호·권미혁·어기구·조승래·민병두 의원 발의)
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위성곤·신창현·강병원·소병훈·유동수·유승희·김현권·정재호·권미혁·어기구·조승래·민병두 의원 발의)
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조승래·윤관석·김종민·최운열·문희상·유승희·원혜영·최인호·김경수 의원 발의)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박경미·박용진·김경협·김종훈 의원 발의)
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강훈식·김상희·김영진·김종민·박경미·서형수·송옥주·신창현·이수혁·이용득·진선미·홍의락 의원 발의)

- 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권칠승·안규백·정춘숙·김철민·전해철·박찬대·강훈식·제윤경·문진국·유은혜·김병욱·윤관석·노웅래·추미애·서형수·표창원·권미혁·인재근·소병훈·이원욱·김종민·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0409)
- 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정우·박정·강훈식·소병훈·박찬대·김철민·전해철·박남춘·신창현·김경진·채이배 의원 발의)
- 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병원·김병욱·남인순·박정·신창현·윤관석·윤종오·이용득·이원욱·추미애·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63)
- 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주승용·김중로·김중회·김삼화·손금주·김광수·최경환(국)·김경진·이동섭 의원 발의)
- 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수민·박준영·신용현·유성엽·장정숙·정동영·천정배·최도자·황주홍 의원 발의)
- 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장정숙·송기석·박준영·주승용·박지원·김동철·김관영·신용현·김경진 의원 발의)
- 8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영진·이찬열·김정우·김경협·소병훈·유은혜·김상희·박정·박남춘·신창현 의원 발의)
- 8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김순례·문진국·장석춘·홍문중·곽상도·윤종필·송희경·함진규·윤영일 의원 발의)
- 8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영진·이찬열·김경협·소병훈·유은혜·박정·박남춘·신창현·조경태 의원 발의)
- 8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윤영일·김광수·이찬

- 열·천정배·김동철·주승용·손금주·정인화·신용현·채이배·오세정 의원 발의)
- 8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김민기·김영호·안규백·송옥주·신창현·유동수·문진국·원혜영·박정·오영훈·정동영·김철민·김정우·김중회·전해철 의원 발의)
- 8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주승용·김중로·김중회·김삼화·손금주·김광수·최경환(국)·김경진·이동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47)
- 8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수민·박준영·신용현·유성엽·장정숙·정동영·천정배·최도자·황주홍 의원 발의)
- 8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윤종필·조훈현·권석창·윤영석·임이자·정병국·서청원·김순례·박맹우 의원 발의)
- 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김민기·문희상·이개호·이해찬·강창일·김영호·이용득·원혜영·김철민·홍영표 의원 발의)
- 9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조배숙·이동섭·황주홍·오세정·이언주·박준영·김경진·김광수·김삼화·김중로·하태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9747)
- 9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정춘숙·김상희·소병훈·신창현·윤관석·채이배·서형수·김중회·오제세·남인순 의원 발의)
- 9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민기·김정우·김철민·박남춘·박재호·박정·서영교·송옥주·신창현·위성곤·이용득 의원 발의)

9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이정미·김종대·윤소하·심상정·추혜선·김종훈·윤종오·이용득·서형수 의원 발의)
9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금태섭·윤관석·김철민·박남춘·권미혁·남인순·박찬대·김정우·김병욱·노웅래·천정배·박정·민홍철·유동수 의원 발의)
9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강석진·이완영·곽대훈·김명연·김광립·김석기·곽상도·김승희·성일종 의원 발의)
9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성수·김영진·김종민·박재호·박홍근·서형수·신창현·윤관석·윤호중·이용득·제윤경·홍의락 의원 발의)
9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민병두·유승희·유동수·박찬대·김경수·서영교·문희상·백재현·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9870)
9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인재근·소병훈·남인순·신경민·진선미·이용득·문희상·원혜영·안호영·김민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9970)
9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심상정·노회찬·추혜선·윤소하·김종대·정성호·박주민·이용주·김현아 의원 발의)
10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오세정·김철민·송기석·김관영·김경진·윤영일·김종희·유성엽 의원 발의)
1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박광운·김두관·김종민·김혜영·김관영·권칠승·신경민·최인호·윤호중·윤관석·이찬열·박영선·김정우·박홍근·백혜련·심기준 의원 발의)
1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권미혁·이용득·심기준·문희상·이수혁·이개호·강병원·한정애·서영교 의원 발의)
1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서형수·송옥주·정재호·백재현·진선미·윤관석·손혜원·김상희·장정숙·이용득·신창현 의원 발의)
1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병원·김병욱·남인순·박정·신창현·윤관석·윤종오·이용득·이원욱·원혜영·추미애·한정애 의원 발의)
10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金成泰·천정배·홍문중·문진국·곽상도·함진규·장석춘·하태경·한정애 의원 발의)
10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김병관·박찬대·이찬열·전재수·윤호중·박광운·최인호·권칠승·양승조 의원 발의)
10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여상규·정갑윤·황영철·박명재·이현재·권성동·이양수·이종명·오신환 의원 발의)
10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문진국·윤영석·조정태·강석진·정유섭·이은권·이종명·나경원·박덕흠 의원 발의)
10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정병국·오신환·유승민·박인숙·정운천·김관영·유의동·김삼화·이언주 의원 발의)
11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문진국·김승희·김정훈·이명수·곽대훈·김수민·윤영일·김성찬·정유섭·김종석 의원 발의)
11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민기·김정우·김철민·박남춘·박재호·박정·서영교·송옥주·신창현·위성곤·이용득 의원 발의)
1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김순례·문진국·장석춘·홍문중·곽상도·윤종필·송희경·함진규·윤영일 의원 발의)
113.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

영·박맹우·함진규·김태흠·홍문표·이현재·박찬우·성일종·김현아·주호영·곽대훈·이양수·정진석·문진국·강석진·노웅래·신상진 의원 발의)

(10시47분)

○위원장 홍영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3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내용은 단말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서형수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의원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2017년 9월 29일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2016 더 나은 삶의 지수 대기환경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3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여 우리 국민들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어 작년 3월 OECD에서는 10년 주기로 발표되는 환경성과평가에서 국내 환경법에 환경정의 개념을 도입하여 세대 간, 세대 내, 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시킬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이제는 환경정책이 환경보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환경자원 이용의 혜택과 부담을 나눔에 있어 차별 없이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환경권을 누리고 법과 정책에 환경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또한 환경정책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용자, 즉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에는 제3조에 환경정의의 정의규정을 삽입하고 제6조에는 모든 국민은 환경적 혜택과 부담에 있어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의 형평성을 보장받을 권리와 모든 국민이 환경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의 실현과 전망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입법은 환경정책의 분배적 정의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법안의 취지대로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정의의 평가를 평가하고 전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면 이는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영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입니다.

특히 친정에 와서 법안을 설명드리게 돼서 다시 한번 기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다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호사들의 독일 이주는 195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60년대 중반에 정점에 달했습니다. 민간에서 이어 오던 이주노동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도 이어져 대한민국 정부는 1961년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63년 체결한 한국 광부의 임시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 간의 협정, 69년에는 한독 정부 간의 간호원 협정에 따라 8000여 명의 광부와 1만 1000여 명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독일에 파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독일 파견 근로는 해외 인력수출을 통한 국내 실업률 감소는 물론 기술 습득, 외화 획득을 통한 경제개발에 기여, 서독과의 정치 외교적 우호관계 증진 등의 효과를 거두었음을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들에 의한 국가적 기여에 대하여 상응하는 지원과 예우가 필요합니다.

14년 정부는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파독 광부·간호사에게 가난한 조국을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편지를 보냈고 2017년 정부도 현충일 추념사에서 파독 근로자에 대한 공로를 언급하면서 파독 광부·간호사들의 조국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조국경제에 디딤돌을 놓았고 그것이 애국이라고 강조하며 파독 근로자들을 근대화의 주역으로 재조명한 바 있습니다.

파독 광부·간호사는 다른 해외 근로자들과 다르게 한국 산업발전의 가장 초기, 1달러의 외화가 아쉬웠던 시절에 당시 3년간의 국내 송금액은 총 수출액의 2%에 이르는 것이었고 파독 근로자들의 송금과 독일 돈 차관 등에 힘입어 산업단지 와 고속도로 등을 건설해서 대한민국 산업기금의 원천이었고 산업발전의 마중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수지 개선과 국민소득 향상을 이루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국가의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지원과 기념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들의 노고와 희생에 합당한 지원 및 예우를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부디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이들의 노고와 희생에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제21항, 제26항, 제32항, 제37항, 제5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들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상정된 법률안 중 정부가 제출한 6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진 외국의 비도로 오염원 관리강화 추세에 맞추어 경유 철도차량을 건설기계, 농기계와 같은 원동기 범위에 포함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

리하려는 것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소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타이어 소음을 줄이고 저소음 타이어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등에서 시행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타이어 소음 허용기준과 소음 성능 표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을 통해서도 최근 편의성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제빙, 탄산수 제조기능의 정수기 부가기기도 정수기 정의에 포함하여 품질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음용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2016년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태부터 지속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 농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수계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저감시설에 대하여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불투수 면적률과 같은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등 비점오염원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환경피해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를 우선 결정하는 원인재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정의 실효성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을 통해서도 기상측기의 신뢰성과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이를 위한 대행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등의 근거를 함께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6개의 법률안은 그간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관계부처와 충분히 논의하여 마련된 것이니만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안은 우선 임금구분 지급 및 확인제를 신

설하여 도급인으로 하여금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토록 하고, 수급인이 전월에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내역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여하여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도입하여 건설노동자가 본인의 기능 숙련도에 따라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수급인이 경영악화, 파산 등으로 공제금을 미납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범위 내에서 직접 납부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적립일수(252일)를 채우지 못한 피공제자도 사망하거나 65세에 이른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퇴직공제제도의 수혜 가능성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건설업의 중층적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지위와 처우가 개선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이해당사자, 관련 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 본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고용노동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9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2항부터 제11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2항부터 제113항까지 52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쟁점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페이지, 의사일정 제65항부터 제67항까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가운데 제65항 김삼화 의원안은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규정된 구직급여 상한액을 최저임금과 연동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구직급여 상한액이 최저임금이 되어 상·하한액 역전현상은 개선될 수 있으나 현재 구직급여 하한

액이 높고 구직급여 상한액이 낮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구직급여 하한액과 최저임금 인상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8항부터 제70항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가운데 제68항 홍영표 의원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외에 제·개정 법령에 대한 사전고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고용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최소화하고 사업 수립 단계부터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들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1항부터 제80항까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 가운데 제71항 이용득 의원안과 제76항 박주민 의원안은 각종 수당을 사전에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포괄임금제가 과도한 근로시간을 야기하는 원인이고 근로기준법상 각종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제73항 이정미 의원안과 제80항 김삼화 의원안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신설하여 관련 법적 혼란을 입법을 통해 해소하는 내용으로 통상임금 개념의 해석상 논란을 최소화하고 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을 노사가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 제74항 한정에 의원안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도를 적용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연 1조 5000억 원에 가까운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2항부터 제83항까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가운데 제82항 임이자 의원안은 기간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은 사용기간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가 계약종료를 우려하여 부상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입니다.

다만 휴업하지 않은 경우까지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정규직 전환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 의사일정 제84항부터 제91항까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 가운데 제84항 김삼화 의원안과 제89항 신창현 의원안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 강화에 필요한 조치인데, 현행 관련 법령체계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 의사일정 제96항부터 제100항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 중 제96항 한정애 의원안은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회성 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정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며, 이행상태 평가제도와 중복 가능성과 이행상태 평가제도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제99항 이정미 의원안은 고객응대업무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로 규정하고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타당하며, 정신적 건강장해의 원인 파악의 용이성,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 의사일정 제101항부터 제104항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가운데 제103항 홍영표 의원안은 산재급여의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한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제105항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소개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업종에 결혼중개업을 추가하고 식품접객업 중 직업소개사업과 겸업할 경우 부적절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세부 업종에 한해서만 겸업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제108항부터 제110항까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가운데 제109항 하태경 의원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를 통상임금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으로 현행 산입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견해를 반영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입법 여부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및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의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영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61항까지 55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쟁점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의원과 이정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슴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슴기살균제 사건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배제하거나 현행법에 따른 20년의 시효기간을 40년으로 변경하는 한편, 가슴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가 특별구제제정에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늘리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예외 없이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대기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모든 배출시설에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가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동물관리위원회를 설

치하려는 것이나 동물복지종합계획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종합계획과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종합계획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 등 2개 신탁법인에만 민관의 지원이 집중됨에 따라 당초 법률 제정 목적과 달리 민간 NGO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신탁 업무를 시민유산신탁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유산신탁협회를 중심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 신탁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신탁자의 의사 확인절차 없이 협회가 신탁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도록 하고 신탁법인은 협회의 회원 중 하나의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동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추가하여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의 건강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관련 기준을 추가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양조사 결과 토양이 토양오염물질 외에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로 함께 오염된 경우 현행법상 토양오염물질과 같이 정화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토양오염정화자가 정화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화계획을 수립한 후 정화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경우 범위를 일부 한정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개정안의 취지가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토양오염 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에게 정화 책임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 등으로 적용범위를 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한정의 의원안은 현행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 등이 제출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의 경우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와 중복되므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의제조항을 두는 내용으로 계획서 간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병원 의원안은 특정 용도로의 취급이 금지된 제한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벌칙규정이 없다는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제재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표지 등의 인증제도 명칭을 변경하고 해외시장 진출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한국환경산업협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마크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보다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여 인증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해외시장 진출 업무를 특정기관에 위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위탁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을 하기 전에, 이상돈 위원님께서 ‘생물 다양성과 서식지 관점에서 본 4대강 사업의 문제점’ 자료집을 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봤습니다마는 특히 환경부의 장관님과 차관님 그리고 간부들께서 꼭 한번 보시고 4대강 이후 후속대책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하여 하겠고, 질의 방식은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질의할 게 많은데, 일단 이번에 채용비리 관련해서 산하기관들 수사대상으로 의뢰되거나 또는 징계를 받은 게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할 것 없이 다 있습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 한국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노사발전재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폴리텍, 한국잡월드 이렇습니다.

이게 청년들에게는 절망을 주는 방식이었어요, 결국은 있는 사람들끼리, 권력을 가진 자들끼리 암암리에 자리를 도모하게 하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두 분 장관님 그리고 기상청장님 내부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난 국감 때 먼저 지적해서 환경부, 노동부 할 것 없이 각종 산하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 관련한 것에 대해서 우선 자체적으로 먼저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나 시스템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 두 분 장관님 또 청장님 잘 마련하셔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 고요.

저한테 5분밖에 안 주어져서 답변은 나중에 한꺼번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한테 의뢰된 법안 중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농해수위에 계신 황주홍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법안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오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만 지난해 저희가 국감하면서 문제 삼았던 것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축분뇨 관리 강화 필요하다, 대청댐의 주요염원은 가축분뇨인데 관리 안 된다.

영주댐도 마찬가지예요. 영주댐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45%가 가축분뇨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된다고 했고 당시 환경부는 허가받지 않은 축사가 많다, 그런데 2018년 3월이나 법을 시행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알고서도 단속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다고 다시 유예해 달라고 하는 법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법안이 진행된 과정을 보면 2014년 2월 20일 저희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는데요, 당시 법안소위 위원장이 김성태 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십니다. 그리고 오늘 파독 간호사 관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려고 오신 이완영 의원님께서도 현재는 농해수위에 계십니다만 그 당시 저희 환노위에서 법안소위에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이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제출했었고요, 새누리당 정부 여당이 제출해서 환경부와 농림부 협의하에 이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이 법안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때도 원래 애초의 정부 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단체들,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공포는 2014년 3월에 했습니다만 실제 시행은 2015년, 그리고 시행 후 2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을 다시 1년을 더 늘려서 시행 후 3년 이렇게 해서 2018년 올해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유예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것 이것도 지금 유예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와 농림축산부가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축산단체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희롱·성추행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모두에 성희롱, 성추행, 채용비리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다 전수조사를 하고 의심 가는 곳에는 특별근로감독을 나갔습니다.

정부 부처 중에 고용노동부가 산하기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징계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직상위자 그리고 기관장까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진

행을 하고 아직도 거기에 대한 징계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용노동부 산하에는 성희롱, 성추행은 물론이거니와 직장 내 비리 그리고 채용비리 이런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올해 3월 24일 날 이 법이 적용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많은 곳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저희가 1월 말 통계를 잡아 보니까 이미 67%가 완료했거나 이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33%는 아직 법적인 절차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실 이 법은 원래 악취 민원 그리고 수질오염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법안이어서 환경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우선적인 중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축산농가들이 무조건 이 기간에 전체적인 제재를 받는 것도 적절치는 않다고 보여서 농림축산부하고 저희하고는 지금 이 과정에, 이것을 개선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농가들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행하는 기간들을 별도로 지정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으면……

또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축산농가들이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이 복잡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지방자치단체하고 논의해서 여기에 신청하시면 농림부하고 국토부, 환경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TF를 구성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지원하면서 충분한 이행 기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된 후에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정애 위원** 협의 완료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협의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는 많이 협의를 했는데 다른 한쪽이 건축 부분에 있어서 농림부와 국토부 사이의 협력이 필요해서 그 부분이 조

금 더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면 대략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이자 위원** 환경부장관님,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지금 가축분뇨 관련돼 가지고 환경부하고 농림축산부하고는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지금 농림축산부 쪽에서는 법률을 개정해서 해야 된다고 하고, 환경부는 행정지침 아니면 유예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장관께서 무허가 축산 관련된 당사자들하고 한번 소통을 하셨나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일단 저희 쪽에서는…… 제 생각에는 농림축산부에 관련된 부분들은 농림축산부장관님께서 소통창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농림축산부장관님하고 장관 협의를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부에서는 사실 이 법의 가장 초점은 수질오염과 악취 민원이라고 보여서 그런 민원 쪽을 잘 이해시키는 것이 환경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또 축산 쪽에 대해서는 농림축산부 쪽에서 의견을 가지고 계셔서 처음 출발은 서로 약간 다른 입장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어쨌든 많은 농가가 적법화에 참여해서 이것을 완료하도록 도와드리는 게 양 부처에서 모두 바라는 일이다라는 것은 합의를 이루었고요, 그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지침으로 만들자 하는 것들은 합의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차관님께서서는 한 번 면담했지요? 차관님 견해는 어때요?

○**환경부차관 안병욱** 예, 저희 물환경국장도 한번 간담회를 가졌고요, 저도 축산단체 대표님들 만나 뵙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임이자 위원** 차관님 견해는 어때요?

○**환경부차관 안병욱** 어떤 견해 말씀이십니까?

○**임이자 위원** 지금 무허가 축산 관련된 당사자들은 법률 개정해서 유예시켜 달라고 계속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3년을 더 유예시켜 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날짜는 굉장히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3월 24일이면? 이게 일몰 법안 아니겠어

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의 견해는 어떻게냐고……

○**환경부차관 안병옥** 제 견해는 과거에 법을 통해서 정했던 부분을 정부가 가급적이면 지켜 나가는 원칙을 가져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농가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부가 세심하게 살펴서 해결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법률 개정 없이도 3월 24일 전까지 농가에서 아주 간소화된 신고만 하시면, 그렇게 되면 충분히 시간을 드려서 적법화에 필요한 내용을 농민들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그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수긍하던가요?

아, 여기서 일몰 법안이라는 것 삭제해 주시고요. 제가 착각했고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그분들이 모두 수용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견 차이는 있었지요. 크게 보면 농민들은 법을 개정해서 유예기간을 늘려서 안정적인 방식으로 적법화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그렇게 되면 과거에 정부가 결정했던 것이 반복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또 그동안에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적법화를 했던 농가들과의 형평성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유예하지 않고도 지침을 통해서 충분히 유예기간을 둬으로써 지자체에 대해서 정부 합동으로 지침을 내려서 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처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임이자 위원** 유예기간을 주면 얼마 정도 주실 생각이십니까?

○**환경부차관 안병옥**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유예기간은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각각의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 농가의 현실적인 여건들을 감안해서 빨리 지원해 줘서 줄일 수 있는 기간은 줄이고 하여간 그 농가가 최대한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한다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이쪽으로 왔다가 또 다시 그리 가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수 위원** 제가 지난 국감 때 가축분뇨 건 가지고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

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 3월 24일 날 적용되는 축사의 대상, 축사가 지금 일단 규모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또 일정한 규모 미만인 경우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지요? 규모별로, 단계별로 적용되는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1단계 적용 대상에서 아까 64% 그 부분이 해당되는 거냐는 전체 문제하고 그다음에 규모와 관계없이 아까 상수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1단계가 전체 규모가 가장 큰 그룹인데요 여기가 올해 2018년 3월 24일까지이고 나머지가 두 번째는 2019년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은 2024년까지 가는……

○**서형수 위원** 아예 적용 제외되는 부분……

○**환경부장관 김은경** 적용 기간이 다르게 되어 있고요.

○**서형수 위원** 제가 보기에 축사가 100㎡, 작은 규모는 적용 자체가 아예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제가 3단계로만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다른 축에서 주거지역이나 학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거리제한에 속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와 상관없이 1단계로 모두 다 편입되어야 하겠고요.

○**서형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는 사실 1단계에 적용되어야 될 규모가 큰 데는 그건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거고 다만 규모와 관계없이 거리제한구역에 있는 소규모 축사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행정적인 부담 이런 문제에 집중하시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 이번에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주로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축사 규모에 대해서는 원칙을 적용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축사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제한 규정 자체를 신속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그 부분을 분명히 설명하세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장관 김은경**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1단계에 속하는, 그러니까 규모가 큰 것과 또 거리제한에 되어 있는 것은 모두 지금 말씀드린 간소화된 신청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방법과 필요한 시간을 산정해서 도와주는 방법들을 적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

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지금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농가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게 쉬워지는 것은 아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문제들을 파악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다 모두 같은 대상으로 삼아서 상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수 위원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 지적하셨듯이 부처 간에 있어서 법률의 실제적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 자체가 만약에 논란이 되면 분명히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단 법률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한 유예기간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분명히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위원장 홍영표 다음은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춘 위원 제가 이것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1월 달에 현장 한 여섯 군대를 한번 직접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소나 돼지, 닭이라든지 염소가 다 환경적으로 보면 차이점이 엄연히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 보고.

예를 들어서 3월 24일 날 법을 시행하는데 우리 최저임금을 보면 지금 범법자가 많이 양산됐지요? 우리가 '꼼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3월 24일 되면 법적으로는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 비율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이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한정에 위원 말씀대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식이든지 제재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 사실 관리감독 못 한 책임이 정부한테 있습니다. 지금 조건을 보니까 어떤 식이든지 정부가 책임 회피할 수가 없어요.

저는 현장을 가서 보고 이렇게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고 충분히 불법으로 가지도 않을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가는 축산농가들도 엄연히 같이, 그런 부분을 현장을 다 목격했는데 지금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꽤 있어요. 준비를 많이 했던 데는 이미 한 50% 넘어선 데도 있고 하지 않은 데는 20% 미만도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법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 80% 가까이 될 겁니다. 여기서 반 이상 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환경부에

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왜 '유예', '유예' 나오는가 하면 유예해 줘도 3년을 하더라도 3년 뒤에 똑같은 일이 발생된다는 것 이게 해결이 좁혀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다는 거더라고, 제가 봤을 때요.

그래서 어떤 식이든지 농민, 축산농가들한테 범법자를 양산하게 해서 안 되는데 환경부가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이상돈 위원의 4대강 문제점에 보면 어떻게든지 축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범법자가 양산되고 축산농가를 접는 사람들도, 현실적으로 제가 준비하는 것도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고 이런 부분이 불가피한데 환경부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 거지만 꼭 그렇게 해 가지고 범법자를 양산하고 축산시장 가격도 여기에서 조절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해 봐야 되고 범법자가 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봐 줘야 될 것 같아요.

유예한다고 해 가지고 정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은 또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환경부가 조금 더 전향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악취나 수질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중에서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축산농가들의 문제들을 실제로 상담하고 현지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그걸 적법화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장에서 평가, 실제로 가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해 대청댐의 녹조관계를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현장을 갔습니다. 여기는 저희 직원들이 다 나가서 실제 조사를 했는데요 79개의 축산농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완료한 곳이 17개이고 진행되고 있는 곳이 45곳이고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는 곳이 17곳으

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해 보고 저희가 이분들의 이유들을 다 들어서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하고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실제로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하면 이것들을 전환하는 데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석춘 위원 제가 본 것은, 건물 측사 지나왔잖아요.

1분만……

비가 오고 소나기가 오고 바람 불고 들이치니까 비가 우사로 다 들어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달아내 버렸어요. 달아내면서 또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해 놓으니까 전부 다 그게 불법이 되어 버리거든요. 불법이 되어 버리는데 그런 전혀 해결하기 난망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더라고요.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봐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참고하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희가 측사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방법들은 쓰지 않겠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위원장 홍영표 신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보라 위원 자유한국당 신보라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완영 의원님께서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국회에서도 2013년에 결의안을 내서 그때 당시 그 결의안이 ‘한·독 수교 130주년 및 근로자 파독 50주년 기념 양국 우호협력증진 결의안’이었는데 그때도 그 내용 중에 ‘정부가 파독 근로자 예우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파독 간호사·광부분들께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초석을 놓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와 관련한 예우와 처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그 역할을 제대로 잘하지 못했다 이런 인식들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이런 제정법이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선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이 제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저도 국회에 있을 때 파독 광부들에 대한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파독 광부도 있지만 중동이나 이런 데에도 기술자들이 많이 나가 있고 어려운 현장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동자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하고 균형이 제대로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고요.

기타 파독 광부 지원책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 법안 잘 봐서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장관님, 혹시 파독근로자기념관에 가 본 적 있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못 가 봤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시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양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예, 맞습니다. 양재에 파독근로자기념관이 있는데 저도 파독 간호사·광부분들과 인연이 있어서 그 기념관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일 방문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기념관을 당시에 2013년도에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함께 개관에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신보라 위원 그 이후에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저희가 사실 기념관, 그때 박근혜정부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럴 때 파독 광부 독일 갔다 오시고 그러면서 정부, 고용노동부하고 산업인력공단하고 해서 만들게 된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가 작년에 와서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요.

저희도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 파독 광부하고 간호사들이 나가서 외화를 벌여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고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장관님께서 아까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정부에서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기림일에 대해서도 당시 국회에서 논의하다 보면 일제하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전원을 기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됐었지만 그래도 일제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림일을 선정했었고요.

그다음에 연평해전 희생자분들 6명의 용사들에 대해서도 전사자로 예우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참전용사들과 형평성 논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란을 뒤로 하고 결국에는 최근에 전사자 예우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제적 조치들이 있으면, 사례들이 생기면 그것이 조금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우 차원에서 이 법안도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법안 제출한 내용 잘 살펴보려고요. 제가 앞서 다른, 중동국가에 나간 건설노동자들도 사막에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우리 산업 발전에,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법안을 제정법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잘 살펴보고 공청회나 여러 가지 부분도 우리가 거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파독 간호사·근로자분들에 대한 지원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까?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 환경부장관님, 가축분뇨 관련되어 가지고 최종 마지막으로 딱 3년만 유예합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위원님, 사실은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법을 잘 이행하는 게 저희의 의무잖아요? 그런 면에서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을 의회가 지켜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서, 환경부하고 우리는 수질이 라든가 악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당사자들하고 만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 나서셔서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설득하시고 해 보실 용의 있으시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위원님들 대체토론이 진행 중인데요, 아마 위원님들이 다른 일정 때문에 먼저 이석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의결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이 해당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종결된 것을 전제로 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61항까지의 안건은 환경소위에, 의사일정 제62항부터 제113항까지의 안건은 고용노동소위에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에 환경소위원장과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십니까?

대체토론 그냥 끝내기 그러니까……

기상청은, 요즘에 추워 죽겠어요.

(웃음소리)

그런데 제가 어제 언론에서 보니까 케이웨더라는 데에서 장기 기상 예측을 하는데 민간기업이 지요?

○기상청장 남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기상청은 그런 것 못 합니까?

○기상청장 남재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굉장히 추운데 아마 내일 오후부터는 따뜻해져 가지고요 9일 날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할 때는 많이 올라갑니다. 지난번 2월 3일 날 리허설할 때 정말 너무 안 좋은, 아주 추운 저거라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9일 날은 좋아질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이번 혹한 때문에 국민들이 기상청 원망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안 하

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는 이번에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온 국민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특히 기후변화 때문에 북극의 한류를 잡고 있는 제트기류가 느슨해져서 이런 사태가 생겼는데 앞으로도 매년 겨울마다 계속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까?

○기상청장 남재철 글썄요, 기후변화 영향은 계속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파나 이런 것들이 양극화가 커져 가지고 더 추운 데는 춥고 또 더운 데는 더 덥고 하는 현상들이 아마 기후변화의 영향인데요, 그것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제 말씀은 올해 북극에서……

○기상청장 남재철 기온이 올라가서……

○위원장 홍영표 기후온난화 때문에 해수 온도가 높아지고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계속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이럴 거냐 이거지요. 편차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기상청장 남재철 장기 예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은 엘니뇨나 이런 걸로 예측하는데요. 보통 금년에 이렇게 심하면 내년에는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은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제가 작년에 북극에 갔다 왔는데 북극에 기상청이 안 나가 있지요?

○기상청장 남재철 북극 다산기지의 극지연구소에서 하는데 기상 전공자들의 관측이나 이런 정보들은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다른 나라는 북극에서의 기상 예측을 위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심지어는 미세먼지까지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극지연구소가 그걸 하고 있습니까?

○기상청장 남재철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원을 2명은 남극 세종기지하고 장보고기지에 매년 파견하고요, 북극 다산기지에 대해서는 극지연구소에 기상 관련 팀들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그 팀들하고 연구사업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올겨울 같은 추위를 기상청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예측이라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청장 남재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강 병 원	김 삼 화	문 진 국	서 형 수
송 옥 주	신 보 라	이 상 돈	이 용 득
이 정 미	임 이 자	장 석 춘	한 정 애
홍 영 표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이 완 영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 양 건
전 문 위 원	송 주 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 차	관 관	김 안	은 병	경 옥
기 획 조 정 실 장		박 홍	천 정	규 기
자연환경정책실장		정 정	종 선	경 영
자연보전정책관		신 황	신 계	영 루
자원순환정책관		김 김	종 영	훈 나
환경경제정책관		하 송	미 형	근 규
대기환경정책관		박 상	용	
기후변화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				
물환경정책국장				
상하수도정책관				

고용노동부

장 차	관 관	김 이	영 성	주 기
고 용 정 책 실 장		임 안	서 경	정 덕
노동정책실장		박 권	성 혁	희 태
노동시장정책관		김 권	덕	호
고용서비스정책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김 경 선
직업능력정책국장	김 영 국
노사협력정책관	김 민 석
공공노사정책관	류 경 희
근로기준정책관	김 왕
정책기획관	김 용 호
국제협력관	김 대 환
기상청	
청 장	남 재 철
차 장	최 흥 진
기획조정관	김 성 균
관측기반국장	김 남 욱
지진화산센터장	이 미 선

【보고사항】

○의안 회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 발의)

(2017. 11. 22. 하태경·김삼화·박병석·박준영·서형수·송옥주·위성곤·유성엽·이연주·이용득·이원욱·이정미·최도자·최인호 의원 발의)

11월 23일 회부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3. 황주홍·김종회·김철민·오세정·이찬열·김관영·김경진·윤영일·주승용·박준영 의원 발의)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7. 11. 23. 황주홍·김종회·김철민·송기석·오세정·이찬열·김관영·김경진·윤영일·박준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4일 회부됨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4. 이상돈·이정미·신창현·김관영·황주홍·홍영표·이종구·조배숙·김동철·심상정 의원 발의)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4. 이완영·박맹우·함진규·김태흠·홍문표·이현재·박찬우·성일종·김현아·주호영·곽대훈·이양수·정진석·문진국·강석진·노웅래·신상진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7. 11. 24. 송옥주·권칠승·안규백·정춘숙·김철민·전해철·박찬대·강훈식·제윤경·문진국·유은혜·김병욱·윤관석·노웅래·추미애·서형수·표창원·권미혁·인재근·소병훈·이원욱·김종민·박주민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4. 권미혁·정춘숙·김상희·소병훈·신창현·윤관석·채이배·서형수·김종희·오제세·남인순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27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2017. 11. 27. 박주민·김정우·박정·강훈식·소병훈·박찬대·김철민·전해철·박남춘·신창현·김경진·채이배 의원 발의)

11월 28일 회부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

(2017. 11. 29. 김승희·문진국·윤영석·조경태·강석진·정유섭·이은권·이종명·나경원·박덕흠 의원 발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9. 정성호·금대섭·윤관석·김철민·박남춘·권미혁·남인순·박찬대·김정우·김병욱·노웅래·천정배·박정·민홍철·유동수 의원 발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 발의)

(2017. 11. 29. 홍영표·이상돈·이석현·문진국·장석춘·신동근·신창현·강병원·이용득·송옥주·김삼화·서형수·한정애·박남춘·유동수·박찬대·홍일표·안상수·송영길·윤관석·정유섭·임이자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30일 회부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7. 11. 30. 김도읍·김기선·이현승·김종석·김성원·엄용수·곽대훈·백승주·경대수·정갑윤·이은재·김한표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11. 30. 정부 제출)

이상 2건 12월 1일 회부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1. 손금주 · 김중로 · 김관영 · 이찬열 · 박주선 · 이용주 · 김삼화 · 주승용 · 조배숙 · 이동섭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1. 송옥주 · 강병원 · 김병욱 · 남인순 · 박정 · 신창현 · 윤관석 · 윤종오 · 이용득 · 이원욱 · 추미애 · 한정애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1. 송옥주 · 강병원 · 김병욱 · 남인순 · 박정 · 신창현 · 윤관석 · 윤종오 · 이용득 · 이원욱 · 원혜영 · 추미애 · 한정애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4일 회부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5. 이원욱 · 김영진 · 이찬열 · 김정우 · 김경협 · 소병훈 · 유은혜 · 김상희 · 박정 · 박남춘 · 신창현 의원 발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5. 주승용 · 노웅래 · 강창일 · 장정숙 · 황주홍 · 박주선 · 최도자 · 이용주 · 손금주 · 박선숙 · 윤영일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6일 회부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6. 주승용 · 노웅래 · 강창일 · 장정숙 · 황주홍 · 박주선 · 최도자 · 이용주 · 손금주 · 박선숙 · 윤영일 의원 발의)
12월 7일 회부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7. 서형수 · 박재호 · 박정 · 박찬대 · 민홍철 · 정성호 · 추미애 · 신창현 · 송옥주 · 최인호 · 김민기 · 윤종오 의원 발의)
12월 8일 회부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8. 송옥주 · 신경민 · 소병훈 · 김철민 · 김영호 · 정동영 · 김중로 · 김정우 · 유동수 · 신창현 · 박정 · 박경미 · 전해철 · 윤관석 · 추미애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8. 임이자 · 문진국 · 장석춘 · 金成泰 · 홍문중 · 곽상도 · 윤종필 · 이양수 · 송희경 · 함진규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1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11. 신동근 · 김민기 · 김영호 · 안규백 · 송옥주 · 신창현 · 유동수 · 문진국 · 원혜영 · 박정 · 오영훈 · 정동영 · 김철민 · 김정우 · 김종희 · 전해철 의원 발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11. 이용득 · 김현권 · 정성호 · 신창현 · 김삼화 · 홍의락 · 서형수 · 남인순 · 강병원 · 한정애 · 송옥주 · 김종대 · 김정우 · 유동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2일 회부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12. 김해영 · 박찬대 · 이찬열 · 전재수 · 변재일 · 박용진 · 안규백 · 신경민 · 최인호 · 양승조 · 김민기 의원 발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12. 송옥주 · 하태경 · 박주민 · 서형수 · 이용득 · 권칠승 · 이훈 · 김철민 · 이정미 · 임종성 · 강병원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12. 임이자 · 김순례 · 문진국 · 장석춘 · 홍문중 · 곽상도 · 윤종필 · 송희경 · 함진규 · 윤영일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12. 임이자 · 김순례 · 문진국 · 장석춘 · 홍문중 · 곽상도 · 윤종필 · 송희경 · 함진규 · 윤영일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13일 회부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13. 하태경 · 정병국 · 오신환 · 유승민 · 박인숙 · 정운천 · 김관영 · 유의동 · 김삼화 · 이언주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3. 이원욱·김영진·이찬열·김경협·소병훈·유은혜·박정·박남춘·신창현·조경태 의원 발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3. 이헌승·함진규·박덕흠·김도읍·이장우·김성원·유기준·이양수·유재중·윤상현·김세연·이진복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4일 회부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4. 조경태·김승희·나경원·황주홍·박완수·송석준·이종명·황영철·이현재·김성찬·송희경·이원욱 의원 발의)

12월 15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5. 김수민·주승용·김중로·김종회·김삼화·손금주·김광수·최경환(국)·김경진·이동섭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5. 김수민·주승용·김중로·김종회·김삼화·손금주·김광수·최경환(국)·김경진·이동섭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5. 조배숙·김수민·박준영·신용현·유성엽·장정숙·정동영·천정배·최도자·황주홍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5. 조배숙·김수민·박준영·신용현·유성엽·장정숙·정동영·천정배·최도자·황주홍 의원 발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12. 15. 정부 제출)

이상 5건 12월 18일 회부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8. 백재현·김영호·추미애·김정우·박찬대·정성호·소병훈·정동영·민홍철·강창일·김중회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8. 백재현·김영호·추미애·김정우·박찬대·정성호·소병훈·정동영·민홍철·강창일·김중회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8. 원유철·윤종필·조훈현·권석창·윤영석·임이자·정병국·서청원·김순례·박맹우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9일 회부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9. 서형수·금대섭·권미혁·문진국·김경협·이용득·최인호·박정·송옥주·노회찬·신창현·박찬대·홍영표 의원 발의)

12월 20일 회부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0. 노회찬·이정미·김종대·윤소하·심상정·추혜선·김종훈·윤종오·이용득·서형수 의원 발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0. 강병원·송옥주·신창현·하태경·김영호·윤관석·추미애·박찬대·이용득·정춘숙·김병욱·김정우·박정·박재호 의원 발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0. 강병원·송옥주·신창현·김영호·윤관석·추미애·정성호·이용득·정춘숙·김정우·문진국·박재호 의원 발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0. 강병원·송옥주·신창현·하태경·김영호·윤관석·추미애·박찬대·이용득·정춘숙·김병욱·김정우·박정·박재호 의원 발의)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0. 강병원·송옥주·김영호·윤관석·추미애·정성호·정춘숙·김정우·문진국·박재호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21일 회부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21. 임이자·金成泰·천정배·홍문종·문진국·곽상도·함진규·장석춘·하태경·한정애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21. 윤한홍·문진국·김승희·김정훈·이명수·곽대훈·김수민·윤영일·김성찬·정유섭·김종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2일 회부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2. 이용득·소병훈·신창현·하태경·김정우·최도자·조배숙·윤관석·박찬대·송옥주 의원 발의)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2. 황주홍·유성엽·조배숙·조정식·정동영·이동섭·김관영·이찬열·최도자·김동철·김종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6일 회부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26. 한정애·권미혁·김정우·김철민·남인순·민홍철·백재현·신창현·유승희·정성호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26. 원유철·강석진·김경진·김선동·김정재·박명재·박찬우·임이자·장석춘·정병국·조훈현 의원 발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6. 강병원·송옥주·신창현·하태경·김영호·윤관석·추미애·박찬대·이용득·정춘숙·김병욱·김정우·박정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27일 회부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7. 강병원·송옥주·신창현·하태경·김영호·윤관석·추미애·박찬대·이용득·정춘숙·김병욱·김정우·박정 의원 발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27. 함진규·박덕흠·윤한홍·박맹우·김재원·최연혜·이장우·민경욱·이은권·강석진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27. 서형수·문진국·이용득·장석춘·김경협·박찬대·전재수·신창현·이정미·최인호·박정·송옥주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28일 회부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2017. 12. 28. 정부 제출)

12월 29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29. 서형수·문진국·이용득·장석춘·김경협·박찬대·전재수·신창현·이정미·최인호·박정·송옥주 의원 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9. 강병원·신창현·김정우·이정미·윤관석·이용득·송옥주·유동수·노웅래·정성호·서형수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29. 강병원·신창현·김정우·이정미·윤관석·이용득·송옥주·박찬대·유동수·노웅래·정성호·서형수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29. 김영우·장제원·서영교·김성태·유승민·이태규·김현아·하태경·주호영·정병국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29. 송옥주·이학영·김현권·제윤경·김민기·서형수·유동수·김정우·윤관석·추미애·강병원·김성수·권미혁·김상희·이용득·박찬대 의원 발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9. 서형수·이석현·권미혁·박찬대·박정·송옥주·이용득·문진국·최인호·강병원·표창원·노희찬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29. 이언주 · 이훈 · 이찬열 · 최운열 · 최도자 · 이동섭 · 정인화 · 신용현 · 김중로 · 윤영일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이상 2건 2017. 12. 29. 정부 제출)

이상 9건 2018년 1월 2일 회부됨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18. 1. 2. 박완수 · 정유섭 · 박맹우 · 이종명 · 송옥주 · 함진규 · 김승희 · 엄용수 · 김성원 · 장석춘 · 김학용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8. 1. 2. 송옥주 · 박찬대 · 김정우 · 정성호 · 문진국 · 유동수 · 신창현 · 위성곤 · 추미애 · 송기현 · 강병원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1. 2. 박광온 · 김해영 · 권칠승 · 신경민 · 전현희 · 윤관석 · 이찬열 · 변재일 · 백혜련 · 이춘석 · 김정우 의원 발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1. 2. 박광온 · 김해영 · 권칠승 · 전현희 · 윤관석 · 이찬열 · 변재일 · 백혜련 · 이춘석 · 김정우 의원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1. 2. 박광온 · 김해영 · 권칠승 · 신경민 · 전현희 · 윤관석 · 이찬열 · 변재일 · 백혜련 · 이춘석 · 김정우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

(2018. 1. 2. 박광온 · 김해영 · 권칠승 · 신경민 · 전현희 · 윤관석 · 이찬열 · 변재일 · 백혜련 · 이춘석 · 김정우 의원 발의)

이상 6건 1월 3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 정동영 · 심상정 · 주승용 · 장정숙 · 황주홍 · 김중로 · 이동섭 · 박주현 · 이정미 ·

이철희 · 노웅래 · 유성엽 · 윤소하 · 최경환(국) · 김광수 · 최도자 의원 발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6건 2018. 1. 3. 정부 제출)

이상 17건 1월 4일 회부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 발의)

(2018. 1. 4. 하태경 · 김삼화 · 박병석 · 송옥주 · 오신환 · 유의동 · 이석현 · 이용득 · 이용주 · 정병국 의원 발의)

1월 5일 회부됨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8. 1. 5. 백혜련 · 유동수 · 김현권 · 김민기 · 김정우 · 남인순 · 신창현 · 박광온 · 최인호 · 김영진 의원 발의)

1월 8일 회부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2018. 1. 8. 박순자 · 이완영 · 이종배 · 강석진 · 조경태 · 박성중 · 함진규 · 홍문중 · 원유철 · 성일중 · 김석기 의원 발의)

1월 9일 회부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8. 1. 9. 이명수 · 김성찬 · 김재원 · 이정현 ·

함진규 · 강효상 · 김명연 · 윤한홍 · 성일중 · 박인숙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 발의)

(2018. 1. 9. 김삼화 · 하태경 · 김광수 · 이동섭 · 최도자 · 신용현 · 이태규 · 이용득 · 문진국 · 김종희 의원 발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8. 1. 9. 이명수 · 김성찬 · 김재원 · 이정현 · 함진규 · 강효상 · 김명연 · 윤한홍 · 성일중 · 박순자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10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8. 1. 10. 정춘숙 · 강훈식 · 신창현 · 최도자 · 윤소하 · 추미애 · 양승조 · 박찬대 · 정성호 · 전재수 의원 발의)

1월 11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

(2018. 1. 11. 신창현 · 유승희 · 박정 · 김상희 · 강훈식 · 문희상 · 노웅래 · 제윤경 · 어기구 · 김철민 · 고용진 · 이수혁 · 박찬대 · 표창원 · 기동민 의원 발의)

1월 12일 회부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8. 1. 16. 주승용 · 김관영 · 정동영 · 김삼화 · 이찬열 · 최도자 · 이개호 · 박준영 · 윤영일 · 손금주 · 민홍철 · 최경환(국) · 박주선 의원 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018. 1. 16. 주승용 · 김관영 · 정동영 · 김삼화 · 이찬열 · 최도자 · 이개호 · 박준영 · 윤영일 · 손금주 · 민홍철 · 최경환(국) · 박주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17일 회부됨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8. 1. 18. 윤재옥 · 추경호 · 광상도 · 정태옥 · 조원진 · 정종섭 · 주호영 · 광대훈 · 김상훈 · 김정재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2018. 1. 18. 우상호 · 고용진 · 기동민 · 김민기 ·

김병관 · 김영호 · 김정우 · 민홍철 · 박찬대 · 서형수 · 소병훈 · 심기준 · 윤관석 · 이용득 · 정동영 · 정성호 · 진선미 · 최도자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19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2018. 1. 19. 우상호 · 고용진 · 기동민 · 김민기 · 김병관 · 김영호 · 김정우 · 노회찬 · 박찬대 · 서형수 · 소병훈 · 송옥주 · 신창현 · 심기준 · 이용득 · 이정미 · 정성호 · 진선미 · 최도자 · 한정애 의원 발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2018. 1. 19. 우상호 · 고용진 · 기동민 · 김민기 · 김병관 · 김영호 · 김정우 · 노회찬 · 소병훈 · 심기준 · 유동수 · 윤관석 · 이용득 · 이정미 · 정동영 · 정성호 · 진선미 · 채이배 · 한정애 의원 발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 19. 황주홍 · 박주선 · 손금주 · 이찬열 · 김수민 · 김중회 · 조배숙 · 이동섭 · 김경진 · 장정숙 의원 발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의원 대표발의)

(2018. 1. 19. 황주홍 · 박주선 · 손금주 · 이찬열 · 김수민 · 김중회 · 조배숙 · 이동섭 · 김경진 · 장정숙 의원 발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 19. 황주홍 · 박주선 · 손금주 · 이찬열 · 김수민 · 김중회 · 조배숙 · 이동섭 · 김경진 · 장정숙 의원 발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 19. 황주홍 · 박주선 · 손금주 · 이찬열 · 김수민 · 김중회 · 조배숙 · 이동섭 · 김경진 · 장정숙 의원 발의)

이상 6건 1월 22일 회부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8. 1. 22. 임이자 · 문진국 · 이양수 · 홍문종 · 광상도 · 송희경 · 장석춘 · 金成泰 · 윤종필 · 함진규 의원 발의)

1월 23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

(2018. 1. 23. 최도자·황주홍·서영교·정인화·김승희·김중로·이용주·전혜숙·주승용·이찬열·권은희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 23. 기동민·인재근·김민기·심기준·정성호·윤관석·박정·김정우·추미애·이철희·이재정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4일 회부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8. 1. 24. 위성곤·신창현·이찬열·윤영일·황주홍·홍문표·김현권·어기구·황영철·김철민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8. 1. 24. 박인숙·손금주·김상희·하태경·유승민·박주민·최도자·채이배·김석기·정병국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 발의)

(2018. 1. 24. 민경욱·송희경·송석준·이은권·염동열·이현승·이양수·김성원·이장우·조훈현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8. 1. 24. 임이자·홍문중·문진국·윤종필·이완영·함진규·장석춘·윤영일·김명연·주광덕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2018. 1. 24. 한정애·김영진·이찬열·강병원·신창현·안규백·이용득·송옥주·이학영·윤호중 의원 발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 발의)

(2018. 1. 24. 이용득·박정·송옥주·김종대·김영호·윤관석·한정애·전해철·고용진·심기준·박홍근·김정우 의원 발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8. 1. 24. 임이자·金成泰·문진국·송희경·함진규·윤영일·김명연·정유섭·김성찬·

성일종 의원 발의)

이상 7건 1월 25일 회부됨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8. 1. 25. 전재수·유은혜·박남춘·박찬대·손혜원·김해영·이종걸·박재호·정재호·최인호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8. 1. 25. 김삼화·김동철·채이배·장정숙·김중로·주승용·이용호·권은희·이찬열·오세정·김광수·하태경·김경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6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8. 1. 29. 송옥주·신경민·안규백·김상희·원혜영·양승조·김성수·이원욱·이용득·강병원 의원 발의)

청소년 노동 보호법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

(2018. 1. 29. 김종훈·최경환(국)·박남춘·정성호·심상정·박정·이정미·김현권·이용득·노회찬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30일 회부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18. 1. 30. 하태경·노웅래·이원욱·지상욱·유의동·정병국·박인숙·김관영·김종대·정운천 의원 발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8. 1. 30. 김민기·신창현·윤관석·노웅래·전재수·강훈식·표창원·오영훈·유동수·김영진·정성호·김현권·김병욱 의원 발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18. 1. 30. 이채익·정갑윤·이현재·최연혜·정유섭·박맹우·홍문중·강길부·김종훈·원유철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0. 신창현·이개호·송옥주·전혜숙·노웅래·정춘숙·홍의락·김병욱·남인순·박홍근 의원 발의)

이상 4건 1월 31일 회부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7. 6. 8. 한정애 · 신창현 · 이용득 · 정성호 · 박남춘 · 송옥주 · 이철희 · 김영주 · 김영진 · 이정미 · 홍일표 의원 발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2017. 6. 19. 최교일 · 이철규 · 김순례 · 金成泰 · 정유섭 · 조훈현 · 김진태 · 정진석 · 이완영 · 이우현 · 유기준 · 김기선 의원 발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7. 7. 26. 송옥주 · 강병원 · 권미혁 · 기동민 · 김경협 · 김민기 · 김병기 · 김병욱 · 김삼화 · 김영주 · 김영호 · 김철민 · 김한정 · 노웅래 · 문진국 · 민병두 · 박정 · 박경미 · 박남춘 · 박영선 · 박재호 · 박주민 · 서형수 · 소병훈 · 송기현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 어기구 · 유동수 · 유승희 · 이훈 · 이수혁 · 이용득 · 이원욱 · 위성곤 · 이정미 · 이찬열 · 임종성 · 전해철 · 전현희 · 정성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최운열 · 추미애 · 홍영표 · 우원식 의원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8. 1. 31. 한정애 · 강훈식 · 고용진 · 김성수 · 김정우 · 소병훈 · 신창현 · 유동수 · 윤관석 · 이철희 · 정성호 · 표창원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8. 1. 31. 강병원 · 신창현 · 이해찬 · 김정우 · 이정미 · 윤관석 · 이용득 · 송옥주 · 박찬대 · 유동수 · 노웅래 · 정성호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8. 1. 31. 강병원 · 백혜련 · 김병욱 · 민병두 · 임종성 · 윤후덕 · 김경협 · 이찬열 · 강훈식 · 박용진 · 송옥주 · 신창현 의원 발의)

이상 6건 2018년 2월 1일 회부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8. 2. 1. 이동섭 · 최도자 · 유동수 · 박준영 · 김관영 · 주승용 · 이태규 · 김삼화 · 윤영일 · 유의동 · 황주홍 의원 발의)

2월 2일 회부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 최도자 · 이동섭 · 이찬열 · 신용현 · 하태경 · 정성호 · 고용진 · 심재권 · 주승용 · 김광수 · 오세정 · 박완수 · 김경진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18. 2. 2. 임종성 · 윤관석 · 송옥주 · 정동영 · 신창현 · 소병훈 · 이용득 · 조정식 · 안호영 · 전현희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8. 2. 2. 신창현 · 강병원 · 김철민 · 노웅래 · 문희상 · 박경미 · 신경민 · 어기구 · 원혜영 · 이수혁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8. 2. 2. 정춘숙 · 한정애 · 강훈식 · 신창현 · 김정우 · 기동민 · 이철희 · 송옥주 · 심기준 · 최도자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5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7. 김정재 · 김재원 · 이주영 · 성일중 · 김종민 · 김정훈 · 심재철 · 정태욱 · 이철우 · 김태흠 · 김광림 · 박찬우 · 송희경 · 민경욱 · 김성찬 · 안상수 · 권성동 · 여상규 · 김진태 · 김성태 · 홍문종 · 김무성 · 金成泰 · 윤상직 · 주광덕 · 윤재옥 · 김규환 · 송석준 · 윤상현 · 유재중 의원 발의)

11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 조정식 · 이원욱 · 안호영 · 최인호 · 전현희 · 안규백 · 윤관석 · 임종성 · 이학재 · 박덕흠 · 엄용수 · 강훈식 · 송석준 · 김정우 · 윤영일 · 민홍철 · 백혜련 의원 발의)

12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7. 12. 4. 김삼화 · 신용현 · 이태규 · 이용주 · 최경환(국) · 이연주 · 장정숙 · 손금주 · 김성식 · 송기석 · 김관영 · 이동섭 · 이용호 · 김동철 ·

김중로 · 박지원 · 주승용 · 김수민 의원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2017. 12. 4. 손금주 · 송기석 · 김중로 · 장정숙 · 김성식 · 김삼화 · 신용현 · 오세정 · 박준영 · 김수민 · 채이배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3. 심재철 · 이석현 · 김태흠 · 박맹우 · 박완수 · 정갑윤 · 이종구 · 이은재 · 나경원 · 이철규 의원 발의)

12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4. 장정숙 · 전해숙 · 조배숙 · 김중로 · 김수민 · 이동섭 · 최도자 · 박주현 · 이찬열 · 김삼화 · 윤관석 · 정동영 · 박선숙 · 김동철 · 유성엽 의원 발의)

12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
법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5. 윤영일 · 주승용 · 황주홍 · 윤한홍 · 박주현 · 박선숙 · 위성곤 · 송기석 · 변재일 · 박준영 의원 발의)

12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1. 윤소하 ·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중대 · 오제세 · 정춘숙 · 김영호 · 김광수 · 정성호 의원 발의)

12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
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7. 박주민 · 김철민 · 윤관석 · 김정우 · 천정배 · 이용득 · 신창현 · 김경진 · 유승희 · 김중희 · 정동영 의원 발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7. 김세연 · 정운천 · 이학재 · 지상욱 · 박인숙 · 하태경 · 정병국 · 유의동 · 오신환 · 유승민 · 이해훈 의원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7. 어기구 · 송옥주 · 문희상 · 송기현 · 권칠승 · 이훈 · 변재일 · 오영훈 · 안민석 · 윤관석 · 유동수 · 박재호 · 조승래 · 박영선 · 박완주 · 김병욱 · 안호영 · 김철민 · 박정 · 원혜영 · 강창일 · 노웅래 · 송영길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12. 28. 정부 제출)

12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
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8. 박덕흠 · 김태흠 · 권석창 · 홍문표 · 김규환 · 김성원 · 이만희 · 김승희 · 윤종필 · 심재철 · 김성찬 · 이은권 · 이채익 · 박명재 · 강석진 · 정용기 · 김광립 · 안호영 · 이용호 의원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9. 김한정 · 소병훈 · 김철민 · 노웅래 · 원혜영 · 오영훈 · 안민석 · 송기현 · 최운열 · 문희상 · 이훈 · 신창현 · 설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2018년 1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저영향개발을 통한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18. 1. 2. 강훈식 · 안호영 · 임종성 · 조승래 · 윤후덕 · 박영선 · 강병원 · 양승조 · 백재현 · 조정식 의원 발의)

1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1. 3. 정부 제출)

1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 10. 김철민·이개호·윤영일·정인화·이찬열·위성곤·신창현·황희·김현권·안호영 의원 발의)

1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
발의)

(2018. 1. 17. 주광덕·이명수·김성원·신보라·박덕흠·성일종·함진규·이은권·정유섭·문진국·곽상도·유민봉·송희경·윤재옥·정진석·홍철호·이양수·김성태·황영철·유재중·권석창·박순자·장석춘·김승희·김태흠·홍문표·이종배·정용기·박찬우·경대수·이철규·송석준·박성중 의원 발의)

1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 22. 최인호·강훈식·김정우·김혜영·노응래·민병두·민홍철·박광온·박재호·박정·윤관석·전재수 의원 발의)

1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물산업육성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18. 1. 23. 송석준·윤상직·김선동·金成泰·이종명·김순례·김종석·이군현·정진석·권석창·장제원·박순자·이만희 의원 발의)

1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18. 1. 26. 이종배·박성중·정진석·이종명·김승희·김석기·홍문표·주호영·이은재·황주홍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
발의)

(2018. 1. 26. 강훈식·이원욱·김현권·조승래·윤후덕·김철민·강병원·한정애·양승조·김민기·안호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
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
부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7. 12. 8. 임이자·문진국·장석춘·金成泰·홍문중·곽상도·윤종필·이양수·송희경·함진규 의원 발의)

2018년 1월 22일 발의자 철회 요구

○의안 철회